

#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

##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「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세부내용에 맞추어 우리 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상의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 유지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「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로 변경(안 제명)
- 나.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
 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로 변경(안 제1조)
  - 2) 「도로법」 제64조를 「도로법」 제76조로 변경(안 제4조)
- 다.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설치를 명문화함(안 제2조)
- 라. 현행 규칙에 규정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함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)

### 3. 개정근거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 (기금운용심의위원 회의 구성)
- 다. 「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 (서울특별시 조례 제4832호)

### 4. 조례안 : 따로붙임

### 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### 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09. 10. 08. ~ 10. 28.(제출된 의견 없음)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9. 11. 05)
- 다.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
##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3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·운용한다.

②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도로법」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

## 2. 기금의 이자수익금

**제5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.

1. 도로굴착복구공사
2.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(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)
3.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, 연구, 감독 업무
4.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

**제6조(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)**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: 토목과장
2. 기금출납원: 담당팀장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)**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
2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
3.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
4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8조(심의회의 구성)**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기획예산과장
2. 재무과장
3. 토목과장
4. 치수방재과장
5.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도로굴착팀장이 된다.

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9조(심의회의 운영)**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.

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1.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2. 제5조제2호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심의회 의 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